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어기구의원 · 이상휘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11958 |
|----------|-------|

발의연월일 : 2025. 8. 4.

발의자 : 어기구 · 이상휘 · 박지원

박정훈 · 최수진 · 박충권

정을호 · 이현승 · 김정재

신성범 · 우재준 · 박성훈

박성민 · 김태호 · 박상웅

임종득 · 강대식 · 구자근

이달희 · 박균택 · 김성원

장민국 · 권향엽 · 서영교

최혁진 · 허성무 · 김형동

권성동 · 김상훈 · 최은석

윤영석 · 김동아 · 안철수

박대출 · 한지아 · 송기헌

김교홍 · 한민수 · 전진숙

김종민 · 김상욱 · 손명수

박범계 · 채현일 · 이기헌

오세희 · 곽상언 · 김장겸

허영 · 조승환 · 이정문

권영세 · 임호선 · 이만희

김태선 · 복기왕 · 이인선

맹성규 · 안호영 · 박수민

김영호 · 정일영 · 박상혁

김소희 · 이해식 · 박 정
홍기원 · 김태년 · 이소영
박정하 · 한준호 · 정춘생
박민규 · 박희승 · 유동수
송옥주 · 임미애 · 이학영
김남희 · 이재관 · 김한규
이언주 · 김영배 · 이용선
신영대 · 박지혜 · 김남근
민병덕 · 강득구 · 이인영
최민희 · 황 희 · 윤준병
서영석 · 김주영 · 배준영
권영진 · 이재정 · 이연희
박수현 · 박홍근 · 이춘석
윤종균 · 추미애 · 부승찬
정희용 의원(106인)

제안이유

철강산업은 모든 제조업에 기초소재를 공급하는 기반산업으로서 특히 첨단 모빌리티, 수소 등 재생에너지, 우주항공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국가·경제 안보에 기여하는 핵심 산업임.

국내 철강산업은 1970년 「철강공업육성법」 제정 이후 고로 기술 등의 도입을 통해 급속 성장하였으나, 현재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와 함께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인한 저가 수입재 범람, 미국 등 주요 철강 수입국의 관세 조치, EU CBAM 등 각종 탄소 규제 속에서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

2023년 기준 철강 부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내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17.8%로 철강산업의 탈탄소화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과제이자 필수 조건임.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소환원제철 등 탈탄소화 기술 혁신, 청정수소 및 무탄소 전력 공급 등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지만, 막대한 비용 소요 및 각종 규제조치 등으로 개별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임. 이와 관련하여 이미 EU,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는 자국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하여 별도 기금 마련, 보조금 지급, 세액공제, 규제간소화 등 각종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향후 국내 철강산업이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거나 지속적인 저가 수입재 범람 등으로 국내 철강 공급기반이 약화될 경우 철강산업은 물론, 국내산업의 생태계 전반이 타격을 입게 되고 국가·경제 안보와 국민경제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음.

이에 제조업의 근간인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철강산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고, 철강산업을 탄소중립 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각종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국가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국가·경제 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통하여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경제 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정부는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탄소중립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 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6조).
- 라.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각종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9조).
-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부처의 협의 및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녹색철강기술을 선정할 수 있으며, 녹색철강기술의 개발 및 관련 설비 도입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음(안 제10조 및 제11조).
-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철강기술의 개발 및 관련 설비 도입으로 인하여 일정 규모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한 철강사업자에 대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으며, 정부는 녹색철강기술을 활용하려는 철강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

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음(안 제12조).

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녹색철강특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녹색철강특구의 원활한 조성·운영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신속처리 특례, 민원의 신속처리에 관한 특례, 산업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녹색철강특구 내 사업에 대한 비용 보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국유 또는 공유 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면, 토지의 매입 및 임대, 도시혁신구역 지정 등 각종 지원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24조까지).

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부처의 협의 및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철강핵심 전략기술을 선정할 수 있으며, 특화선도기업, 철강전문기업을 선정하거나 확인하고, 해당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 분야별 전문가의 파견·알선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

자. 정부는 철강산업 분야의 실증시험·신뢰성평가·성능검증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기업 등이 보유한 실증·생산 관련 시설을 철강사업자에게 개방·활용하게 할 수 있으며, 실증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적·행정적·기술적 지원 등을 할 수 있음(안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차. 정부는 협력모델을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기업 간 상호협력을 촉진하거나 협력모델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34조 및 제35조).

카. 정부는 철강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제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37조 및 제38조).

타. 철강사업자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다른 철강사업자와 공동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특례를 규정함(안 제40조).

파. 정부는 원활한 전력 수급과 용수 공급을 위하여 철강산업에 대한 국가 전력망 및 용수 공급망 설치·확충에 관한 사항을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국가수도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함(안 제42조).

하. 정부는 철강산업의 친환경 원료인 철스크랩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고품질 철스크랩의 회수·가공 등 기반시설 구축, 철스크랩 품질 등급의 표준화 등에 관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철스크랩 가공전문기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음(안 제43조 및 제44조).

거. 정부는 철강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 규정 강화, 부적합 철강재의 수입 및 유통의 억제, 불공정 무역행위 대응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으며, 철강 원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관세 등 제도 개선 및 지원 시책을 마련할 수 있음(안 제45조).

- 너. 정부는 철강산업 분야의 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이들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음(안 제46조).
- 더. 정부는 철강산업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기술개발사업 촉진을 위하여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거나 정부출연금의 지원기준 및 협금부담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함(안 제47조 및 제48조).
- 러.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철강산업의 신속한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하여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철강산업 관련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고, 특히 신속하게 추진 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음(안 제49조).
- 머. 철강사업자는 녹색철강기술 등 철강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시험·평가, 검증 및 생산 활동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활동에 필요한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음(안 제52조).
- 버. 철강산업의 인력 양성 및 확보를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유치에 관한 사업 추진, 고용보조금의 지급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 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철강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철강산업진흥센터를

설치하여야 함(안 제58조).

어.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및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철강산업특별회계를 설치함(안 제59조).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통하여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경제 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철강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고로(高爐), 전기로, 반사로 등의 각종 용해로에서 철광석, 재생용 고철 및 철강 부스러기 등을 용해, 압연, 제강 등 가공 처리하여 선철, 주철, 강, 합금철 등의 분, 괴, 퍼들바(puddle bar), 파일링(piling), 빌릿(billet), 블룸(bloom), 슬래브(slab) 등 각종 1차 형태의 철강재를 생산하는 산업

나. 강괴, 형강 및 기타 1차 형태의 철강재를 열간 또는 냉간 압연·압출·연신, 인발 및 기타 성형 처리하여 판, 봉, 선 및 반제품 형태의 기타 형강을 제조하는 산업

- 다. 주조, 원심 분리 및 기타 방법에 의하여 각종 철강관, 튜브, 중공 파일 및 관련 연결구류를 제조하는 산업
 - 라. 구입한 압연 강재 및 기타 철강재를 표면 처리·절단 및 기타 가공하여 중간재 상태의 특수용 철강 재료를 제조하는 산업
 - 마. 그 밖에 철광석으로부터 주철 및 강철을 생산하거나 이를 가공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금속 공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산업
2. “녹색철강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로서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기술을 말한다.
- 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16호에 따른 녹색기술로서 철강산업과 관련된 기술
 - 나. 그 밖에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과 관련된 기술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술
3. “녹색철강특구”란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여 국내외 투자, 녹색철강기술의 연구개발 및 관련 제품의 제조·공급 등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4. “철강핵심전략기술”이란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기술로서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어 제25조에 따라 선정된 기술을 말한다.
5. “철강사업자”란 철강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6. “사업재편”이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재편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철강 산업이 국가·경제 안보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을 인식하여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재원조달 계획의 수립 등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하여 국가 전력망 및 용수 공급망의 설치·확충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례, 규제 완화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철강사업자와 철강 산업의 발전에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제2장 철강산업 지원을 위한 추진체계

제5조(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탄소중립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기본방향
2. 철강산업의 원활한 전력 수급과 용수 공급을 위한 국가 전력망 및 용수 공급망 설치 · 확충에 관한 사항
3. 철강산업의 발전전망에 관한 사항
4. 철강산업의 사업재편 촉진을 위한 세제 및 금융 지원에 관한 사항
5.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6. 철강산업의 국제 교역 및 관세 현황과 국내 수급 동향에 관한 사항
7. 녹색철강특구 등 철강산업의 혁신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8.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녹색철강기술 등 관련 기술개발 및 투자에 관한 사항
9. 전기로를 활용한 저탄소 기술개발 및 관련 설비 도입을 위한 철스크랩 수급에 관한 사항
10. 수소환원제철 기술개발 및 관련 설비 도입을 위한 수소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사항
11. 철강산업 관련 소재 · 부품 · 장비의 원활한 국산화 및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에 관한 사항

12. 철강산업의 시설투자 또는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신속한 인·허가를 위한 사항
 13. 철강산업의 전문인력 양성·보호 등에 관한 사항
 14. 철강의 원활한 제조 및 공급 등을 위한 인프라 조성 등에 관한 사항
 15.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세제지원 등에 관한 사항
 16. 철강산업의 연구 및 개발 등에 관한 사항
 17.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기본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되, 제9조에 따른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철강산

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제9조에 따른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에 전년도 실행계획의 이행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실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철강산업의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 ① 정부는 매년 철강산

업에 관한 경제적·산업적·국제적 현황을 조사하고 발전전망을 예측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철강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① 정부는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기반의 조성과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체계적 수립을 위하여 철강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①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이행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녹색철강기술의 선정 및 제외, 녹색철강기술의 개발 및 관련 설비 도입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조세 감면 등에 관한 사항
3. 철강 제조 및 공급 등을 위한 인프라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필요한 관계 법령 및 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5.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필요한 세제 및 금융 지원에 관한 사항
6.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철강산업과 관련된 특례에 관한 사항

7. 녹색철강특구의 지정 · 해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제1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한 인 · 허가 등의 신속처리 특례에 관한 사항
 9. 철강핵심전략기술의 선정 및 제외, 철강핵심전략기술의 개발 및 관련 설비 도입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에 관한 사항
 10. 제32조에 따른 실증기반 확충 지원에 관한 사항
 11.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협력모델의 선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2. 제42조에 따른 철강산업의 원활한 전력 수급과 용수 공급을 위한 국가 전력망 및 용수 공급망 설치 · 확충에 관한 사항
 13. 제49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의 특례에 관한 사항
 14. 제52조에 따른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15.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과 관련된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 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산업계 · 학계 · 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

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 그 밖에 철강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
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된다.

④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항을 미리 검토·조정하고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다루기 위하여
위원회에 철강산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지명하는 차관이 된다.

⑤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
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
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연구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의 장
또는 철강사업자 등에게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
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조정위원
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녹색철강기술의 선정 및 지원

제10조(녹색철강기술의 선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부처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녹색철강기술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녹색철강기술을 재검토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 부처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녹색철강기술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녹색철강기술을 선정하거나 제2항에 따라 녹색철강기술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정부와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영업비밀 등 기업의 경영활동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선정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녹색철강기술의 선정 기준 · 절차

및 재검토, 자료제출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녹색철강기술에 대한 지원 등) ① 정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철강사업자에게 녹색철강기술의 개발 및 관련 설비 도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전기로를 활용한 저탄소 기술 등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의 브릿지 기술개발 및 관련 설비 도입에 관한 사업
 2. 기존 전기로의 탄소배출을 저감하는 기술개발 및 관련 설비 도입에 관한 사업
 3. 수소환원제철 기술개발 및 관련 설비 도입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녹색철강기술의 개발 및 관련 설비 도입에 관한 사업
- ② 제1항에 따른 보조·융자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녹색철강기술의 조세 감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철강기술의 개발 및 관련 설비 도입으로 인하여 일정 규모 이상 온실가스(「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 배출량을 감축한 철강사업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녹색철강기술을 활용하려는 철강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4장 녹색철강특구 등 철강산업 기반 조성

제13조(녹색철강특구의 지정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녹색철강특구로 지정 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사전에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철강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녹색철강기술 등 관련 투자 또는 기술개발 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이 위치하고 있거나 이전 또는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3. 그 밖에 녹색철강특구로 지정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시·도지사가 녹색철강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녹색철강특구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녹색철강특구의 명칭, 위치 및 범위

2. 녹색철강특구 지정 필요성 및 기대 효과
3. 녹색철강특구 조성 및 발전 계획
4. 녹색철강특구 조성 및 발전에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환경기금의 규모 및 조달 방안
5. 녹색철강특구 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청정수소의 공급 확대와 생산시설(청정수소 생산을 위하여 사용되는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확충 방안
6. 녹색철강특구 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공급 확대와 설비 확충 방안
7. 그 밖에 녹색철강특구 지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녹색철강특구 지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녹색철강특구 조성계획을 승인하고 녹색철강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중복하여 녹색철강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1. 녹색철강특구 조성계획이 녹색철강특구 지정 취지에 부합할 것
 2. 충분한 기업의 입주수요 확보가 가능할 것

3. 녹색철강특구에 필요한 부지 및 정보통신망·전력·용수 등 기반 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4. 소요 재원의 조달 방안이 실현 가능할 것
5. 그 밖에 녹색철강특구 지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④ 제3항에 따라 녹색철강특구를 지정하여 조성할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속한 녹색철강특구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대상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녹색철강특구를 조성하는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한다.

1.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지방공기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3. 그 밖에 녹색철강특구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

또는 그 시설을 설치하고 부지를 조성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⑥ 사업시행자는 사업 규모와 내용, 사업 시행기간 및 재원 조달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와 실시계획의 승인권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녹색철강특구 또는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녹색철강특구 및 사업시행자의 지정, 실시계획의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녹색철강특구의 지정 해제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녹색철강특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1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녹색철강특구의 지정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2. 제19조에 따른 보조금을 당초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녹색철강특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관련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제5항에 따른 지정이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2.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토지의 매수 등이 지연되어 시행기간 내에 개발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제13조제5항제3호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4.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13조제6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5.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대체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조를 준용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사업시행자는 녹색철강특구 조성계획과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종전의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대체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⑦ 그 밖에 녹색철강특구의 해제 및 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특구 육성시책) ① 정부는 녹색철강특구의 혁신적 발전을 위하여 녹색철강특구의 육성에 관한 시책(이하 “특구 육성시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② 특구 육성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철강특구 육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녹색철강특구 육성을 위한 산업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3. 녹색철강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하 “특구 입주기업”이라 한다)의 연구개발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특구 입주기업의 연구개발 성과의 지식재산권 출원·관리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5. 특구 입주기업의 전문인력 등의 양성에 관한 사항
6. 녹색철강특구의 체계적 개발 및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녹색철강특구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부는 특구 육성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특구 육성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입지, 세제, 재정, 행정 등에 관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6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신속처리 특례) ① 사업시행

자는 다음 각 호의 협의·승인·인가·허가 등(이하 “인·허가 등”이라 한다)이 자연되어 녹색철강특구의 조성·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인·허가 등의 신속한 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인·허가등이 의제되는 사항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또는 승인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인가·허가 등이 의제되는 사항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3.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따른 도로 점용 허가
4. 그 밖에 녹색철강특구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인·허가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이하 “인·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인·허가 등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인·허가권자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해당 인·허가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인·허가 등을 자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인·허가권자는 인·허가 등의 처리 계획을 15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하며, 인·허가권자가 인·허가 등의 처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사업시행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30일 이내에는 처리 계획을 회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처리 계획을 제출한 인·허가권자는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인·허가 등의 처리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인·허가 등의 처리 과정에서 불가피한 연장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인·허가권자가 제3항의 처리기간 내에 인·허가 등의 처리 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회신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의 처리기간 내에 인·허가 등의 처리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은 날부터 60일이 지난 날에 인·허가 등의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⑥ 그 밖에 인·허가 등의 신속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민원의 신속처리에 관한 특례) 특구 입주기업이 철강산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해당 업무를 관掌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사안을 관련 법령에 따라 조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에 따라 제출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서의 검토 및 결과 통보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등록의 면제 확인
3.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에 따라 제출한 유해성·위험성 조사 보고서의 처리
4.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라 제출한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5. 그 밖에 특구 입주기업의 녹색철강기술 관련 연구개발·투자·제품생산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원 사항

제18조(녹색철강특구의 산업기반시설 설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철강특구의 원활한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천재지변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이중화 시설을 포함한다)을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1. 녹색철강특구의 전력 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녹색철강특구의 용수 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녹색철강특구에서 배출되는 폐수 및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녹색철강특구에 연결되는 도로
5. 그 밖에 녹색철강특구에 필요한 기반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19조(녹색철강특구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철강 특구에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1. 철강산업 관련 투자를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산업집적기반시설 및 산업기반시설의 설치 · 운영
2. 녹색철강특구 부지의 조성, 의료시설 · 교육시설 · 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
3.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도입
4.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청정수소 생산시설의 도입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 · 재생에너지 설비의 도입
6. 그 밖에 녹색철강특구의 원활한 조성 및 운영, 생산시설 구축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0조(조세 감면에 관한 특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철강 특구의 조성 ·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구 입주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철강특구 내 수소연료공급시설, 청

정수소 생산시설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조세 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21조(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철강특구의 조성·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구 입주기업 및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3.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4.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5.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제22조(사용료 등 감면에 관한 특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구 입주기업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등 국유 또는 공유 재산의 사용료·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및 감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및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3조(토지의 매입 및 임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녹색철강특구로 지정된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지매입의 요건 등 부지매입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도시혁신구역의 지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녹색철강특구를 같은 법 제40조의3에 따른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 절차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장 철강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지원

제25조(철강핵심전략기술의 선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부처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철강핵심전략기술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철강핵심전략기술을 재검토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 부처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철강핵심전략기술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철강핵심전략기술을 선정하거나 제2항에 따라 철강핵심전략기술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정부와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영업비밀 등 기업의 경영활동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선정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철강핵심전략기술의 선정 기준·절차 및 재검토, 자료제출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철강핵심전략기술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철강사업자에게 철강핵심전략기술의 개발 및 관련 설비 도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융자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특화선도기업의 선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화선도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총매출액 중 철강핵심전략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하는 제품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
2. 총매출액 중 철강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한 연구개발비 지출 비중
3. 철강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한 지식재산권 또는 전문 연구인력 보유 현황

4.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

5. 그 밖에 철강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특화선도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특화선도기업 선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화선도기업의 선정 기준 및 절차, 선정을 위한 조사,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철강전문기업 여부에 대한 확인)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철강전문기업으로 확인할 수 있다.

1. 총매출액 중 철강핵심전략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하는 제품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② 제1항에 따른 철강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으려는 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한 기업이 철강전문

기업에 해당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철강전문기업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철강전문기업의 확인을 위한 조사나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특화선도기업등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제27조에 따른 특화선도기업 및 제28조에 따른 철강전문기업(이하 “특화선도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성장촉진 및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의 수립 지원 등
 2. 재정, 금융 등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
 3. 연구개발, 인력양성, 기반조성 사업에 대한 지원
 4. 기술·인력·금융·경영·입지 등 분야별 전문가의 파견·알선
 5. 특허, 기술동향 등 기술혁신을 위한 정보의 제공
 6. 해외진출 전략에 대한 지도 및 자문 등
 7. 그 밖에 특화선도기업등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특화선도기업등 선정 또는 확인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친 후 제27조의 선정서 또는 제28조의 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선정 또는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 또는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 또는 확인을 받은 경우
2. 특화선도기업등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부도,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기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고의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재산·환경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취소가 불가피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선정 또는 확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기업에게 이를 알려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 또는 확인의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실증기반의 개방·활용) ① 정부는 철강산업 분야의 실증시험·신뢰성평가·성능검증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보유한 실증·생산 관련 시설을 철강사업자에게 개방·활용하게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

관”이라 한다)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이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라 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제1항 각 호의 기관은 실증·생산 관련 시설의 개방·활용 실적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연구회의 이사장 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실증·생산시설의 개방·활용에 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실증기반의 확충) ① 정부는 제34조에 따라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협력하여 실증시험·신뢰성평가·성능검증 등에 필요한 시설·설비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비용 등 재정적·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수요기업이 해당 시설·설비의 개방·운영계획, 구매의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3조제2항에 따라 실증시험 또는 성능검증 등을 위하여 시설·설비를 개방하는 수요기업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 및 공유의 시설, 설비, 기계, 기기 및 지식재산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지원내용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실증시험·성능검증 등 촉진 및 지원) ① 정부는 철강산업 분야의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에 개발된 기술이나 이전받은 기술의 실증시험·성능검증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실증시험, 성능검증 등에 필요한 시설 구축·운영
2. 실증시험, 성능검증 등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 제공기업에 대한 지원
3. 기술료 감면, 재정 부담비율 완화 등 기업 참여 촉진
4. 그 밖에 실증시험·성능검증 등의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수요기업이 공급기업이 개발한 철강산업 관련 기술에 대하여 실증시험·성능검증 등을 지원하는 경우 정부는 해당 기업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대상 및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협력모델의 발굴) ① 정부는 협력모델(철강산업 분야에서 수요

기업 사이 또는 공급기업 사이의 수평적 협력, 수요·공급기업 사이의 수직적 협력 등 참여하는 기업 간에 상호이익을 위하여 구축한 협력체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기업 간 상호 협력을 권고·알선할 수 있으며, 상호 협력하려는 기업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쟁력강화 계획서를 신청 받아 협력모델 선정을 위한 심의를 할 수 있다.

1. 품목별 목표

2. 기업 간 협력내용

3. 연구개발, 시험·평가, 검증, 생산 또는 투자 계획

4. 필요한 지원 및 규제개선 등에 관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력모델의 발굴, 선정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협력모델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간 상호협력을 촉진하거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협력모델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동기술개발

2. 공동기반구축 및 물류·보관

3. 기술이전 및 연구개발·생산 등을 위한 투자

4. 신뢰성평가, 성능검증 등 적합성 평가

5. 시험제품 제작 및 설비 확충

6. 신뢰성 보증
7. 제52조에 따른 규제개선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제46조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우선구매 계획 등을 수립할 때 협력모델의 기술개발 품목을 우대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및 우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대·중소·중견기업의 공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특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의 선정과 협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 철강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 참여기업 또는 공급기업과의 공동기술개발에 참여하는 수요기업에 대한 정부출연금의 지원기준 및 현금 부담비율을 해당 사업과 관련한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장 철강산업 관련 특례 등

제37조(세제 지원 등) ① 정부는 철강사업자가 사업재편을 위하여 일정한 시설투자 또는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 및 과세이

연 등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철강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손비처리, 자산재평가, 과세이연, 법인세 감면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1. 노후 또는 과잉설비(생산능력이 수요를 초과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설비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설비를 말한다)의 폐쇄 · 감축에 따라 자산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 재편계획에 따라 합병, 분할 또는 양도 · 양수하는 경우

3. 고효율 또는 저탄소 설비로의 전환을 위하여 설비투자를 하는 경우

4. 노후하거나 에너지효율이 낮은 설비를 양도하는 경우

5. 사업재편에 따른 신규 투자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제38조(재정 지원 등) ① 정부는 철강산업의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철강사업자(이하 “사업재편 승인기업”이라 한다)의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에 대한 보조금

2. 고부가가치 또는 환경친화적 제품 개발을 위한 공공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3. 민간주도로 기업·대학·연구기관 등이 협업하여 수행하는 철강 산업 관련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4. 철강산업 관련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개선, 노후 설비의 해체 및 생산 방식의 전환에 대한 보조금
5. 지방에 대한 철강사업자의 핵심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입지보조금, 기반시설 연계 투자보조금 등 지원
6. 사업재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단기 유동성 부족의 해소를 위한 자금 대출, 지급보증 등 금융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2.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5.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대상·기준·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규제 특례 등 추진) 정부는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산업구조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단지 개발, 생산시설 신·증설, 생산공정 개선, 설비 폐쇄 등

과 관련된 환경·소방·건축·에너지·안전 분야 인·허가 등 절차의 통합 또는 간소화

2.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환경 관련 기준의 초과에 대한 규제의 특례
3. 신기술 적용 또는 신공정 전환에 따라 필요한 기술 검증이나 평가 기준의 미비 등에 대한 신속한 조치

제40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다른 철강사업자와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설비 가동률의 조정, 생산량 감축 또는 감산에 관한 협의
2. 품목별 생산량의 조정 및 출하 시기 조정 등 수급 안정화에 필요 한 협의
3. 공급능력 축소 또는 공정 합리화를 위한 공동 생산 및 투자, 관련 기반시설의 공동 활용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할 수 있다.

1. 철강산업 구조적으로 공급의 과잉, 수익성 악화 또는 글로벌 경

쟁력 저하 등의 산업위기 상황일 것

2. 철강산업의 공급망 안정, 기술혁신, 환경변화 대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 범위 내의 공동행위일 것
 3. 공동행위에 참여하는 철강사업자 간 과도한 차별이 없고, 공동행위가 특정 철강사업자에게만 부당하게 유리하거나 공동행위 참여 여부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이 아닐 것
- ③ 철강산업의 생산구조 전환, 설비통합 또는 사업재편을 위한 절차의 일환으로서 둘 이상의 철강사업자 간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방식으로 주고 받는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제1항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설비 가동률, 생산능력, 원단위(단위 생산량을 기준으로 에너지 · 원료 등 자원의 소비량을 나타내는 지표를 말한다), 제품별 손익 등 사업재편 검토에 필수적인 정보
 2. 기업 합병 또는 설비통합을 위한 실사 및 검토 과정에서 공유되는 비공개 경영 정보
 3.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승인 또는 조건부 지도에 따른 정보 공유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례 적용에 필요한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사업재편 및 수급조절의 유도) 정부는 철강사업자의 자발적인

사업재편 추진 또는 수급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철강 사업자에게 사업재편계획안 및 수급조절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재편 및 수급조절을 유도할 수 있다.

제42조(철강산업을 위한 국가 전력망 및 용수 공급망 설치 · 확충) ①

정부는 철강산업의 발전과 원활한 전력 수급을 위하여 철강산업에 대한 국가 전력망 설치 · 확충에 관한 사항이 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철강산업의 발전과 원활한 용수 공급을 위하여 철강산업에 대한 용수 공급망 설치 · 확충에 관한 사항이 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법」 제4조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국가 전력망 및 용수 공급망 설치 · 확충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정부는 국가 전력망 및 용수 공급망이 설치 · 확충되는 지역의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주민과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는 등 해당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3조(철강산업을 위한 친환경 원료 공급망 강화) ① 정부는 친환경 철강 원료인 철스크랩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고품질 철스크랩의 회수, 선별, 가공 및 유통 기반시설의 구축 및 고도화
2. 철스크랩 품질 등급의 표준화 및 인공지능 기반 자동 검수 시스템의 확산 지원
3. 고품질 철스크랩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수입 다변화 및 전략적 비축 방안 마련
4. 철스크랩 거래 투명화를 위한 공정 거래 환경 조성
5. 철스크랩산업 종사자 및 기술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인력 양성 지원
6. 철스크랩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금융 · 세제 · 입지 · 행정 및 재정 등에 관한 지원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철스크랩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순환자원 지정, 폐기물 규제 등에 관한 제도 개선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철강 및 철스크랩 업계, 관련 협회, 학계 등과 협의하여 철스크랩 수급 안정 및 품질 고도화를 위한 민관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제44조(철스크랩 가공전문기업 육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철스크랩 가공 규모, 재무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업을 철스크랩 가공전문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4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철스크랩 가공전문기업을 우선하여 지원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철스크랩 가공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철강산업의 보호 등) ① 정부는 철강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 규정 강화, 부적합 철강재의 수입 및 유통의 억제, 불공정 무역 행위 대응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철강 원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관세 등 제도 개선 및 지원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46조(철강제품의 수요창출) ① 정부는 철강산업 분야의 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이들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철강산업 분야의 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선구매 계획수립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조달청 등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6.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③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자는 우선구매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철강산업 기술개발사업의 추진) ① 정부는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글로벌 기술격차 해소를 위한 연구개발사업
2.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수소환원제철기술 개발사업
3. 철강산업 기술개발을 위한 성능검증 및 실증센터 구축사업
4. 그 밖에 철강산업의 생태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개발사업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제1항의 기술개발사업이 우선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

업자로 하여금 제1항의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철강사업자
 2. 국공립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4. 정부출연연구기관
 5. 전문생산기술연구소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원 범위·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기술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7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사업으로서 국가정책적으로 중요성이 높고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며 기술개발의 난이도 또는 기술개발의 참여에 따른 위험도가 높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및 같은 법에 근거한 관련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정부출연금의 지원기준 및 현금부담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사회

적·경제적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경우에는 지원기준을 높이거나 현금부담비율을 낮춘 후 자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된 사실과 그 사유를 통보한다.

제49조(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철강산업의 신속한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관련 법령과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녹색철강기술의 개발 및 관련 설비 도입에 대한 보조사업
 2. 제18조에 따른 녹색철강특구의 산업기반시설 설치사업
 3. 제19조에 따른 녹색철강특구에 대한 보조사업
 4. 제47조에 따른 철강산업 기술개발사업
 5. 그 밖에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하여 사업 목적,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 ②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중 국가·경제 안보, 탄소중립 전환,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특히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면제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0조(국제협력 등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철강산업의 글로벌 파트너십 형성을 통하여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철강산업을 위한 통상협력, 해외시장 진출 지원, 전문인력 교류, 국제공동연구 수행 등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1조(금융지원)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은 철강사업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거나 보증조건 등을 우대할 수 있다.

제52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① 철강사업자는 녹색철강기술 등 철강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시험·평가, 검증 및 생산 활동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활동에 필요한 규제개선(이하 “규제개선”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정비가 필요하지 아니한 신청내용에 대

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개선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규제개선을 신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통보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는 검토 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 내용, 신청내용에 대한 처리결과, 규제개선 여부 등을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 해당 규제를 개선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라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하고, 조속히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둘 이상인 경우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 연구개발, 시험·평가, 검증 등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2 및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의 절차에 따라 관련 규제에 관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의 특례에 대해서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도지사는 이를 검토하여 같은 법 제72조 및 제81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특례 관련 사항을 신청할 수 있다.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회신한 답변 또는 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규제개선을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와 관련한 세부사항 및 규제개선의 심사기준, 절차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2조에 따른 규제개선을 부여받아 시행하는 사업 등을 관리·감독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규제개선을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제개선의 적용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취

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용받은 경우
 2. 제52조제9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3. 규제개선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고의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재산·환경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
- ③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한 세부사항 및 규제개선의 적용 취소 등
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철강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제54조(철강산업 인력의 양성 및 확보) ① 정부는 철강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 등 관련 연구개발 인력의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철강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을 추진할 수 있다.

1. 철강산업 인력의 전문역량 향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철강산업 인력의 연구개발 및 전략경영 관련 교육 및 지원에 관
한 사항
3. 직업 훈련, 직업 능력의 개발 및 향상에 관한 사항

4. 신규 인력유입의 활성화 등 고용 유지 및 안정에 관한 사항
5. 퇴직근로자 등 철강 숙련 인력이 소유한 기능·지식의 활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기술계승에 관한 사항
6. 철강 제조 공정을 위한 작업장 환경의 개선,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7. 해외 고급 인력의 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철강산업 우수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5조(철강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철강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철강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철강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실시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된 교육과정 또는 내용이 극히 불량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④ 그 밖에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56조(해외 우수인력의 발굴·유치 및 특례) ① 정부는 철강산업 관
련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유치를 위하여 해외 대학·연구기관·기
업의 전문인력에 관한 조사·분석을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외 우수인력에 관한 정보의 활용을 위
하여 제1항에 따른 조사·분석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철강산업 관련 해외 우수인력의 유치를
위한 국제네트워크 구축, 국제행사 참가 등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
다.

④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철강산업에 종사
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의 기준·절차와 체류자격별 체류기
간의 상한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정부는 철강산업 관련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유치를 위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7조(고용보조금의 지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철강산업의 원활
한 인력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철강

사업자에게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국가철강산업진흥센터 및 철강산업특별회계

제58조(국가철강산업진흥센터의 설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철강 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철강산업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진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철강산업 시장 및 기술의 조사·분석과 수집정보의 이용
2. 철강산업 진흥을 위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3. 철강산업과 관련된 경영 지원과 그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
4.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 등 경쟁력 강화 지원 및 철강산업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사업
5. 철강산업 관련 시설의 환경개선, 인력 양성 및 확보 지원 등에 관한 사업
6. 철강산업 진흥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7. 그 밖에 철강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진흥센터의 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진흥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철강산업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①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 및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철강산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②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철강산업 관련 사업에서 징수한 기술료
 -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 5. 회계 보유자산의 매각수입 또는 운용수입
 - 6. 회계 소관 예탁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 수입
 - 7. 차입금
 - 8. 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 ③ 회계의 세출은 다음과 같다.
 - 1. 철강산업을 위한 국가 전력망과 용수 공급망의 설치 · 확충
 - 2. 녹색철강기술의 개발 및 관련 설비 도입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3. 특구 육성시책 실행을 위한 사업
 4. 녹색철강특구의 산업기반시설 설치
 5. 녹색철강특구의 생산시설 구축 등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6. 철강산업 인력의 양성 및 확보를 위한 지원
 7. 진흥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
 8. 철강산업의 기술개발사업
 9. 철강산업의 국제협력 지원
 10. 철강산업 혁신성장 전략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11. 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12. 회계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회계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 ⑤ 그 밖에 회계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장 보칙

제60조(자료 제출 및 검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녹색철강특구 관리기관 및 철강산업 관련 기관·법인·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녹색철강특구 관리기관 및 철강산업 관련 기관·법인·단체의 사무소, 사업장 및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는 등 필요 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6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62조(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진흥센터의 임직원
3. 제61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법인의 임직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녹색철강특구의 산업기반시설 등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8조 및 제19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설치가 진행 중인 시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비용 지원은 이 법 시행 이후 시설에 투자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